###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0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윤호중·홍기원·김한규

정성호 • 이병진 • 강선우

박희승 • 강득구 • 이학영

문진석 • 한민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 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1절"을 "3·1절, 제헌절"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1		
따른 국경일 중 <u>3·1절</u> , 광복	<u>3·1절, 제헌</u>		
절, 개천절 및 한글날	<u>절</u>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